

대전광역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5
----------	-----

제출년월일 : '95. 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감면규정이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의 장(과세면제 및 경감)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7조 등)
- 나.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취득신고규정을 정비함 (안 제20조)
- 다. 등록세 납부에 있어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함
(안 제24조의2)
- 라.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3000원으로 하고, 주민세균등할 납기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안 제26조, 제27조)
- 마.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과 같이 1세제곱미터당 판매용 음용수는 100원, 목욕용수중 온천수는 50원, 기타용수는 10원으로 함 (안 제7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관계법령 : 생략

다. 합 의 : '94. 12. 14 내무부로부터 준칙 시달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를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를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중 “징수유예를”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를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110조의4제2항제3호”를 “법 제26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자진신고납부등”을 “신고납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진납부”를 “신고납부”로 하며, 동항제12호중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니엄”을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중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을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로 한다.

제2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중 “법 제128조의3제2항제1호”를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2,5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 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 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200, 000원

구	분	세액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이하 30억원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 법인		50,000원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법 제202조제1항”을 “법 제9조의2”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중 “제30조 내지 제33조”를 “제30조 내지 32조”로 한다.

제55조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제279조, 제290조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법 제238조의2”를 “법 제238조의2, 제279조, 제29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중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하며, “비과세를”을 “비과세 또는 감면을”로 한다.

제79조중 “물 1세제공미터당 10원”을 “물중 판매하기 위한 음용수는 1세제공미터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세제공미터

당 50원, 기타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이외의 물은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 제9조 및 제9조의2 ----- -----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 -----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 ----- -----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 (생략)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 ----- ----- ----- ----- ----- 1.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4. (생략)</p> <p>(신설)</p>	<p>제24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61조 내지 제291조 ----- ----- ----- ----- -----</p> <p>1. ~4.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2(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5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3제2항제1호에 의한 '구관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개인 : 2,500원</p> <p>2. 법인 : 별지와 같음</p>	<p>제25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 ----- ----- -----</p> <p>제26조(세율) ----- -----</p> <p>1. 개인 : 3,000원</p> <p>2. 법인</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세</th> <th>율</th> </tr> </thead> <tbody> <tr> <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td> <td></td> <td>500,000원</td> <td></td> </tr> <tr> <td>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0,000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세</th> <th>율</th> </tr> </thead> <tbody> <tr> <td>-----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td> <td></td> <td>500,000원</td> <td></td> </tr> <tr> <td>-----)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세	율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		500,000원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날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00,000원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구 관내의 종업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인																													
구	분	세	율																										
-----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		500,000원																											
-----) ----- -----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27조(납기등) ①주민세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p> <p>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p>	<p>(삭제)</p>
<p>제32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2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 2 -----</p> <p>-----</p> <p>-----</p> <p>-----</p> <p>-----</p> <p>-----</p> <p>-----</p>
<p>제33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 동원 또는 전사, 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삭제)</p>
<p>제34조(감면결정통지) 구청장은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p>	<p>제34조(감면결정통지) ----- 제30조 내지 제32조 -----</p>

현행	개정안
<p>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 ----- -----</p>
<p>제5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5. (생략)</p>	<p>제5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제279조, 제290조제1항 ----- ----- ----- ----- -----</p> <p>1. ~5. (현행과 같음)</p>
<p>제5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 제279조, 제290조제1항의 ----- 비과세 또는 감면 ----- ----- 비과세 또는 감면을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9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 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p>	<p>제79조(과세표준 및 세율) ----- ----- 물 중 판매하기 위한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50원,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온천수 이외의 물은 1세제곱미터당 10원 -----</p>